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08
----------	------

2022. 3. 25.(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3월 16일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상욱 의원)

가. 제안사유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적용대상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함. (안 제4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함. (안 제6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
-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는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2020)¹⁾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 소속 교원들(유치원 포함)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교원치유센터를 지정해

1) 한국보육진흥원(2020),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p.17~18.

교원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 미흡함.

- 또한, 2021년 수립한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2~2026)에도 본 조례 제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²⁾
- 보육교직원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보육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대상,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 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의 범위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으로 본 조항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도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2) 제4차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2~2026) p.310

-주요내용: 「충청북도 보육교직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함.

- 현재 충청북도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2022~2026)이 수립(계획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관련 사업내용이 일부 포함됨) 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함.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충 및 법률상담, 심리적 안정지원, 교육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시·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보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은 결과적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상담·현장컨설팅 사업 등 추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현장컨설팅 사업 추진

연번	사업명	내역	
		지원내용	예산
1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5년간의 보육정책 추진 여건 분석, 과제 설정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시 연계 추진)	45,000천원
2	위원회의 설치·운영	분기별 1회 회의(수당 100,000원×4회×14명)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시 연계 추진)	5,600천원
3	상담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5명)이 보육교사심리적·정서적 고충상담, 아동학대 예방관련 업무수행(기 시행중)	139,306천원
4	다문화영유아 취약보육지원	다문화·장애아·연장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사 역량 강화(기 시행중)	10,000천원
5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컨설팅	보육과정 컨설팅, 표준보육과정 심화교육, 재무회계 인사 노무 현장 컨설팅(기 시행중)	10,000천원
6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의심 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기 시행중)	10,000천원
7	종사자 역량 강화	정부 보육정책 운영 방향 공유 및 안심보육 환경조성 등 정보교류(기 시행중)	20,000천원
8	보육교직원 연수	직급별 교사 역량강화교육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교육(기 시행중)	10,000천원

나. 추계 결과 :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3.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도 비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세 출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	-	-	45,000	45,000
위원회의 설치·운영	5,600	5,600	5,600	5,600	5,600	28,000
상담전문요원	139,306	143,485	147,790	152,223	156,790	739,594
취약보육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교육 및 컨설팅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아동학대 예방교육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종사자 역량강화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보육교직원 연수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원 비용	0	0	0	0	0	0
재원 조달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1,112,594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지방세	204,906	209,085	213,390	217,823	267,390
	세외수입	0	0	0	0	0

※ 상담전문요원은 인건비로 연도별 임금인상율은 3%로 가정